

#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2009. 2. 6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마포구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재산세 부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정시장가액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21조제1항)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나.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21조의2제3호나목)

주택의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4까지로 규정

### 다. 세부담의 상한 조문 신설(안 제27조의 2)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의 경우 해당연도 재산세 상승률은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원 이하는 100분의 110, 6억원 초과는 100분의 130를 넘지 않도록 상한 규정을 둠

### **3. 개정근거**

- 가.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87조(과세표준), 제188조(세율),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 나. 구세 조례 표준(안) 통보(지방세정책과-13751, 2009. 3. 12)

###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9. 4. 9. ~ 2009. 4.2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9.04.30)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라.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21조의2 중 “각호의”를 “각 호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1조(과세표준) ①</b>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②~④ (생략)</p> <p><b>제21조의2(세율)</b>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2. (생략)</p> <p>3. 주택</p> <p>가. (생략)</p> <p>나. 가목이외의 주택</p>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u>&lt;과세표준&gt;</u></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u>&lt;세 율&gt;</u></th> </tr> </thead> <tbody> <tr> <td>4,000만원 이하</td> <td>1,000분의 1.5</td> </tr> <tr> <td>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4.~5. (생략)</p>	<u>&lt;과세표준&gt;</u>	<u>&lt;세 율&gt;</u>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p><b>제21조(과세표준) ①</b>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p> <p>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p> <p>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p> <p style="text-align: center;">②~④ (현행과 같음)</p> <p><b>제21조의2(세율)</b>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주택</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가목 외의 주택</p> <table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u>&lt;과세표준&gt;</u></th>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50%;"><u>&lt;세 율&gt;</u></th> </tr> </thead> <tbody> <tr> <td>6천만원 이하</td> <td>1천분의 1</td> </tr> <tr> <td>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td> </tr> <tr> <td>3억원 초과</td> <td>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 의 1천분의 4)</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4.~5. (현행과 같음)</p>	<u>&lt;과세표준&gt;</u>	<u>&lt;세 율&gt;</u>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 의 1천분의 4)
<u>&lt;과세표준&gt;</u>	<u>&lt;세 율&gt;</u>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u>&lt;과세표준&gt;</u>	<u>&lt;세 율&gt;</u>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 의 1천분의 4)																		

현 행	개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27조의2(세부담의 상한)</u>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u>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li> <li>2. <u>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u>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li> <li>3. <u>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u>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li> </ol>